## 검사강화제도(ESP)관련 "정의(definition)" 개정

관련 규칙 시행 일정

선급 및 강성규칙 1편 2장 101. 용어의 정의

2021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 되는 선박

## ○ 개정 사유

1. 독립형 탱크로 구성된 Oil Tanker의 경우, 화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강화제도(ESP)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IACS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검사강화제도 정의에 화물지역 내에 일체형 탱크를 가지는 선박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추가.

## ○ 개정 사항

- 1. 검사강화제도(ESP)와 용어의 정의 중 아래의 내용 추가
  - : 해당제도는 검사강화제도 대상 선박 중 화물지역 내에 일체형탱크를 가지는 선박에 만 적용되며 검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박소유자는 우리 선급과 협의하여 상세한 검사계획서(Survey Programme)를 작성하여야 하며. 추가하여 대한민국 선박안전법을 적용 받는 선박의 경우 1편, 2장, 1901. "대한민국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특별규정"의 요건도 만족해야 함.

## ○ 영향 분석

- ✓ 안전, 보안 또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/또는 기여
  - : 해당사항 없음.
- ✓ 순치수 또는 총치수에 미치는 영향
  - : 해당사항 없음.